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6년 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및 불합리한 규제 반영 등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(안 제22조, 안 제28조)

○ 법 제27조제2항 → 법 제27조제6항

○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 2 → 법 제27조제6항 및 영 21조

○ 영 제29조제1항제14호 → 영 제29조제1항제13호

나. 토석채취료 등 시가적용기준 개선(안 제30조)

○ 토석·광석등의 채광물 채취료 등 시가적용기준을

- 현행 “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”으로 하던 것을
- “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”으로 함.

다. 공유재산 감정평가 의뢰 가능한 범위 확대 (안 제30조, 안 제66조)

○ 개정 전 : 감정평가기관(제30조), 감정평가법인(제66조)

○ 개정 후 : 감정평가업자(감정평가사, 감정평가법인)로 통일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16. 9. 21 ~ 10. 12)

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마. 성별영향평가분석 : 원안동의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4항 중 “법 제27조제2항의 규정”을 “법 제27조제6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2”를 “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”로 한다.

제28조제4항제5호 중 “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”로 한다.

제30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시가적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(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평가한 매각 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.

제30조제4항 중 “감정평가기관”을 “감정평가업자”로 한다.

제66조 후단 중 “감정평가법인”을 “감정평가업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행정재산의 위탁관리) ① ~ ③ (생 략)	제22조(행정재산의 위탁관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	④ 법 제27조제6항----------.
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2에 의한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.	⑤ ----------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----------.
⑥ (생 략)	⑥ (현행과 같음)
제28조(대부료의 요율) ① ~ ③ (생략)	제28조(대부료의 요율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.	④ ----------.
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「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」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	5.----------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----------
6.·7. (생 략)	6.·7. (현행과 같음)
제30조(토석채취료 등) ① (생 략)	제30조(토석채취료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. 다만,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.	② ----------. 다만, 시가적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(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평가한 매각 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,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,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	④ ---------- 감정평가업자----------.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제66조(공유토지의 분필)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.	제66조(공유토지의 분필) ----------. ---------- 감정평가업자----------.